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-25호

「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2년 11월 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○지방자치법 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, 같은법 시행령 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(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)에 따라

○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2023년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비

- 의정활동비(1인기준): 월 1,100,000 원, 연 13,200,000 원
- 월 정 수 당(1인기준): 월 1,668,000 원, 연 20,016,000 원

○ 2024년~2026년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률

- 전년도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

○ 조례 상위법 불부합 해당 조 개정

- 제1조 "같은법 시행령 제36조" → "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"
- 제4조제3항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별표6 및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"

  →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."

3. 개정조례안: 별도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2. ~ 2022. 11. 7.(6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
2) 전화 : 061-830-6065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1부.
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제36조제2항 별표 6 및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”를 “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〔별표 1〕

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의 정 활 동 비	월 1,100,000	1인기준
월 정 수 당	• 2023년: 월 1,668,000 • 2024년~2026년: 전년도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	〃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----------. ----------
제4조(여비) ①·② (생 략) ③ 제1항의 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별표 6 및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	제4조(여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.
[별표 1] **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표**(제6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)	[별표 1] **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표** (제6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)

구분	금액	비고
의정활동비	월 1,100,000	
월정수당	• 2019년: 월 1,558,000 • 2020년~2022년: 전년도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	

구분	금액	비고
의정활동비	월 1,100,000	1인 기준
월정수당	• 2023년: 월 1,668,000 • 2024년~2026년: ----------	〃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